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 발의연월일: 2020. 6. 1.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안민석 · 이학영 · 변재일

문진석 · 남인순 · 박완주

박 정 의원(10인)

제안이유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립 속에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입법실적을 기록하며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 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일하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상시 국회 체제를 구축하고, 법제 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운영의 효율화 를 도모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신설,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국회의원의 심사·표결권 제한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의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회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정기회가 아닌 월의 1일에는 매월 임 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 나. 국회의원의 징계 여부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윤리조 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의4 및 제156조의2 신설).
- 다.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6조).
- 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함(안 제86조 삭제).
- 마. 국회의원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표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1조의2 신설).
- 바. 국민이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의3 신설).
- 사. 국회의원의 불출석에 대한 징계 규정을 신설함(안 제155조제1항제 12호의2 및 제163조제3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본문 중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을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과 12월 11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총선거가 있는 경우"를 "총선거일이 있는 월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에 따른 임시회"를 "임시회"로, "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를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에 따른 임시회"를 "2월·4월 및 6월 임시회"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4(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① 의원이 제1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 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사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③ 조사위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9조제4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본문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각각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한다.

제29조의2제4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본문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각각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사목을 삭제한다.

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4조제3항 단서 중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를 "제66조에"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을 "윤리특별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3항 전단 중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을 "구성과 운영"으로 한다.

-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6조의2를 삭제한다.

제48조제6항 본문 중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을 "선임"으로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57조의2제9항 중 "제4항 또는 제5항에"를 "제4항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를 "바로"로 한다.

제58조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8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를 "법률안의"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전단 중 "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

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을 "안건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를 "위원회가"로, "제3항 본문에"를 "제3항에"로,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를 "법률안에"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제1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1조의2(표결 등의 제척·회피)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거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1. 제29조에 따른 겸직 사항
- 2. 제29조의2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
- 3. 의원 자신 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하여 진행 중 인 재판, 수사 등 사법절차와 관련된 사항
- ② 의원 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은 직권이나의원 10명 이상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의 이의가 있

- 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나 표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3조의3(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 ① 18세 이상의 국민 은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민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이 하 "국민청구법률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국민청구법률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 ④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국민청구법률 안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 제15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의2. 다음 각 목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63조 및 제15장에서 같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이하 "불출석일수"라 한다)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때

- 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 ② 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불출석일수와 연간 총 회의일수의 산정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6조제1항 중 "제155조"를 "제1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 항 중 "제155조제10호"를 "제155조제1항제10호"로 한다.

제1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6조의2(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의 징계 요청) 국회의원윤리조사위 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1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5조제10호"를 "제155조제 1항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5조"를 "제15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제155조제2호"를 "제155조제1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55조제8호"를 "제155조 제1항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단서 중 "제155조제10호"를 "제155조제1항제10

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과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 1.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30일 이하의 출석정지
- 2.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 3.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60일을 초과하는 출석정지

다만, 제155조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여 부의된 징계에 대해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하려는 때에는 90일 이상의 출석정지만 의결할 수 있다.

제165조 중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을 "회의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의 겸직·영리업무 종사 및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의 겸 직·영리업무 종사 및 의원 징계에 관하여 종전의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에 자문한 사항은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의 원윤리조사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
정 등) ① (생 략)	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	②
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u>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u>	1. 정기회가 아닌 월(月)의 1일
<u>6일</u> 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	과 12월 11일
만, 국회의원 <u>총선거가 있는</u>	<u>총선거일이 있</u>
<u>경우</u>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	는 월에는
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	
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2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	임시회
는 <u>30일(8월 16일에 집회하는</u>	<u>해당 월의 말일까지로</u>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	<u>다만, 임시회의 회기</u>
<u>지)로</u> 한다. <u><단서 신설></u>	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u>30일로 한다.</u>
3. <u>제1호에 따른 임시회</u> 의 회기	3. <u>2월·4월 및 6월 임시회</u>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	
다.	
<u><신 설></u>	제22조의4(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

제29조(겸직 금지) ① ~ ③ (생 저략)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추천·지명 등에 따라 임명·외촉된 경우는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회) ① 의원이 제1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윤리조사
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조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의 조사위원과 필요한 공무원
<u>을 둔다.</u>
③ 조사위원장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
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에 관
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에29조(겸직 금지)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의
원윤리조사위원회

<u>윤리심사자문위원회</u>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u>윤리심사자문위원회</u>는 의장 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 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 ⑧ (생 략)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지 ① ~ ③ (생 략)
 -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u>윤리심사자문위원회</u>는 의장 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 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u>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u>
5 <u>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u>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의원윤
리조사위원회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⑤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 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회운영위원회 가. ~ 바. (생 략) <신 설>

<u>사.•아.</u> (생 략)

- 2. 법제사법위원회
 가. ~ 바. (생 략)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
 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 3. ~ 17. (생 략)
- ② (생략)
-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생략)
 -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u>제86</u> 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u>체계·자구 심사를</u> 의뢰하였거 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

⑥ (현행과 같음)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1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
<u>소관에 속하는 사항</u> <u>아.·자.</u> (현행 사목 및 아목
<u>기.</u> <u>기.</u> (현용 기급 및 기급 과 같음)
2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u>제</u> 66 고 제
<u> 조에</u>

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 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 제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u>제44조제1</u> 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신 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 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④ ~ ⑥ (현행과 같음)
]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40 조 (전 여 구 달 11 전 47 년)
윤리특별위
원회를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케이크 이 4세 메르 그렇이이
<u>제22조의4에 따른 국회의원</u>
윤리조사위원회
<u>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u>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하여는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
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
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u>운영</u>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 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 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 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 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 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 장이 위촉한다.
-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u>한다.</u>	
6	- <u>구성과</u>
<u> </u>	
<u><</u> 삭 제>	

한다.

-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위원이 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ㅈ ~ ⑤ (생 략)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생략)

제53조(폐회 중 상임위원회의 정

세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 ⑤ (현행과 같음)
6
<u>선임</u>
,
⑦ (현행과 같음)
<u><삭 제></u>

례회의) ① 상임위원회(소위원 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 중에 한 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세 번째 월요일부터 한 주 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 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 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 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 회한다.

② 정례회의는 해당 상임위원 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및 청 원, 그 밖의 안건과 주요 현안 등을 심사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⑧ (생 략)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⑧ (현행과 같음)	
9	
	- —
<u> 제4항에바</u>	로
	- –

① (생 략)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생 략)
<u><신 설></u>

⑦ ~ ⑨ (생 략)

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 구 심사에 관하여는 제5항 단 서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위원회는 의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 거나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관하 여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u>⑧</u> ~ <u>⑩</u>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삭 제>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
•
•
1.•2. (현행과 같음)

 3.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

 안: 5일

4. (생략)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 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 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 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 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2. (생략)
- ②·③ (생 략)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u>안건(체계·자</u> 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 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 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

<u> <약 세 / </u>
4.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입법예고) ①
법률
<u> 안의</u>
<u>.</u>
<u>.</u>
1. •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u>안건을</u>

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 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 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 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 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 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단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3
<u>서 삭제></u>

-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 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 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 <삭 제> 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 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 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 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 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⑥ 제4항에-----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

④ 위원회가
<u>제3항에</u>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u><단서 삭제></u>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 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되어야 한다.

⑦·⑧ (생 략)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저 자동 부의 등)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⑤ (생 략)

제86조(체계·자구의 심사) ① 위 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 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 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① 음)	(연앵과 숱
2	
<u>법률안에</u>	
③ ~ ⑤ (현행과 점 <u><삭 제></u>	百百)

- 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제8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수 있다.
- ③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대상 법률인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

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신 설>

제111조의2(표결 등의 제척·회피)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 여 질의·토론하거나 표결에 참 여할 수 없다.

- 1. 제29조에 따른 겸직 사항
- 2. 제29조의2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 3. 의원 자신 또는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에 대하여 진행 중인 재판, 수사 등 사 법절차와 관련된 사항
- ② 의원 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은 직권이나 의원 10명 이상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 또는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은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나 표결을 회피할
 수 있다.
- 제123조의3(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청구)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에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수 있다.
 - ② 국민은 제1항에 따라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려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청구 이유와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 법률안(이하 "국민청구법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 저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수 있다.

1. ~ 12. (생 략) <u><신 설></u> 률안"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24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국민청구법률안이 타당하다고 이저하는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제51조에 따른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④ 국민청구법률안에 대한 국민의 동의 방법·절차 및 국민청구법률안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23조,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제155조(징계) ①	_
	_
	_
	_
	_
	_
	_
	_
	_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다음 각 목 외의 사유로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13. ~ 16. (생 략) <신 설>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 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163조 및 제15장에서 같다) 에 출석하지 아니한 일수(이 하 "불출석일수"라 한다)가 연간 총 회의일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된 때 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원 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 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나. 제163조에 따른 징계로 출석정지된 경우 13. ~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2호의2에 따른 불 출석일수와 연간 총 회의일수 의 산정 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5조제1항-----

한다.

- ② ~ ⑥ (생 략)
-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 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 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 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55조제1항제10호
<u>.</u>
제156조의2(국회의원윤리조사위
원회의 징계 요청) 국회의원윤
리조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
고하고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
에 보고한다.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
의 시한 등) ①
-제155조제1항제10호
<단서 삭제>

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 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 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후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② (생략)
-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지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2. (생략)
 - 3. 30일(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 9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가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한다)는 2분의 1을 감액한다.
 - 4. (생략)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u>제155</u>조제8호·제10호 또는 제11호에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①
제155조제1항
1. • 2. (현행과 같음)
3 <u>제155조제1항제2호</u>
•

4. (현행과 같음)

조제1항제8호-----

(2) -----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③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 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u>제155조제1</u>

<u>.</u>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
조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기준과 종
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
<u>다.</u>
1.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
분의 20 미만인 경우: 30일
이하의 출석정지
0 보초서이스키 서기 초 최이

- 2.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20 이상 100
 분의 30 미만인 경우: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 3. 불출석일수가 연간 총 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
 수: 제명 또는 60일을 초과하
 는 출석정지

<u>4</u>	 		
	 	제155	조제1

<u>0호</u>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 저 구든지 국회의 <u>회의(본회의, 위</u> 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항제10호
	<u>.</u>
	<u>⑤</u>
	다만, 제155조제1항제12호의2에
	해당하여 부의된 징계에 대해
	다른 종류의 징계를 의결하려는
	때에는 90일 이상의 출석정지만
	의결할 수 있다.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세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
	<u>회의를</u>